##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4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김영배·윤후덕·전현희

이학영 · 박희승 · 조 국

이병진 · 강유정 · 민형배

한병도 • 고민정 • 박범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을 포함한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훼손에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이 강조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지역별 또는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온실가스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추가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 너지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 성하고 녹색건축물을 보급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2 조).

또한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 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각각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의 완화는 그 완화비율이 낮아 저층이나 용적률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하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각각 1 00분의 120 이하로 완화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 화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 항). 법률 제 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에너지총량 관리"를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에너지 소비 총량"을 각각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전단 중 "에너지총량"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에너지 소비 총량"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 소비량"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 소비 총량"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총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건축물의 에너지"를 각각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115 이하"를 각각 "100분의 1 20 이하"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녹색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u>에너지</u>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u>온실가</u>
<u>총량 관리</u> ) ① 시·도지사는	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관리) ①
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	
여 <u>에너지 소비 총량</u> 을 설정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고 관리할 수 있다.	<u>총량</u>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②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u>에너지 소비 총량</u> 을 설정하려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총량</u>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③
건축물 <u>에너지총량을</u> 달성하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	<u>소비 총량을</u>
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	122	조()	개별	별	건	축	물의	긔	에	너?	지_	소
	비	총	량	ス	미한	<u>-</u> )	1	) -	국트	ξū	1통	부
	장된	간은	<u> </u>	Γ	기·	产	위 7	7]	대	0	을	위
	한	Ę	탄소	중	립	•	녹	색건	성진	}-	기	본
	법」		제8	3조	에	I	다른	=	건	물	부	문
	의	중	장기	7]	및	Ċ	년도	<u>별</u>	<u> </u>	2 실	l가	·스
	감축	<b>支</b>	목글	張 S	븨	달	성	을	위	하여	ᆆ	신
	축	て	축	물	ロブ	į	기	존	7	크	물	의
	<u>에</u> เ	月ス	:] :	소브	] :	총	량-	을	제	한	할	수
	있다	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u>에너지 소</u> 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u>에너</u> 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 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 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 ④ 기존 <u>건축물의 에너지</u> 소비 총량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

제12소(개별 건축물의 <u>온실가스</u>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 제
<u>ই</u> ) ①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u>소비 총량</u> .
2
<u>온실가스</u>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3)
③온실
<u>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u>
<u>기는 배한 옷 웨디지 그리 5 5</u>
④ <u>건축물의 온실가스 배</u>
출 및 에너지
<u>.</u>

리에 따른다.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 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저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 성의 활성화) ① (생 략)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 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 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
5 이하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u>10</u>0분의 115 이하
- ③ (생략)

⑤건숙물의 온실가스 배
출 및 에너지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
성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2
1
<u>100분의 12</u>
<u>0 이하</u>
2
<u>10</u>
0분의 120 이하
③ (현행과 같음)